

수원역 아너스빌 타임원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 당첨후 계약을 하지 않아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상실되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 후 계약 체결하실 고객들만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44-6236
---	---------	------------------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6.10.)로부터 1년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5.22.(금)	2026.07.06.(월)	2026.07.13.(월)	2026.07.16.(목)	2026.07.18.(토) ~ 2026.07.21.(화)	2026.07.23.(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06.(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72**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5.22.(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205**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7.13.(월)	2026.07.16.(목)	2026.07.18.(토) ~ 2026.07.21.(화)	2026.07.23.(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3-1)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6.10.)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135-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층 2개동 총 114세대 중 일반분양 114세대 중 잔여 53세대

■ 입주시기 : 2028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172	01	084.6388A	84A	26	101	101, 201, 204, 301, 404, 501, 504, 601, 604, 704, 1201, 1304
					102	104, 201, 204, 301, 304, 404, 504, 601, 704, 801, 804, 1104, 1204, 1404
	02	084.8874B	84B	27	101	202, 302, 303, 402, 403, 502, 602, 702, 703, 802, 903, 1302, 1402
					102	202, 302, 303, 402, 403, 502, 503, 602, 603, 703, 802, 803, 903, 1203
	합 계			53	-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약식 표기 (타입)	공급 세대수	해당 (동)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계약시)	2차 (30일 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2026.10.26	2027.02.25	2027.06.25	2027.10.25	2028.02.25	2028.06.26	
84A	6	101동 1호	1층	1	343,036,132	400,763,868	743,800,000	5,000,000	32,190,000	74,380,000	74,380,000	74,380,000	74,380,000	74,380,000	74,380,000	260,330,000
			2층	1	346,679,565	405,020,435	751,700,000	5,000,000	32,585,000	75,170,000	75,170,000	75,170,000	75,170,000	75,170,000	75,170,000	263,095,000
			3층	1	350,276,878	409,223,122	759,500,000	5,000,000	32,975,000	75,950,000	75,950,000	75,950,000	75,950,000	75,950,000	75,950,000	265,825,000

			5~9층	2	357,517,625	417,682,375	775,200,000	5,000,000	33,760,000	77,520,000	77,520,000	77,520,000	77,520,000	77,520,000	77,520,000	271,320,000
			10층 이상	1	364,712,252	426,087,748	790,800,000	5,000,000	34,540,000	79,080,000	79,080,000	79,080,000	79,080,000	79,080,000	79,080,000	276,780,000
	6	101동 4호	2층	1	348,524,341	407,175,659	755,700,000	5,000,000	32,785,000	75,570,000	75,570,000	75,570,000	75,570,000	75,570,000	75,570,000	264,495,000
			4층	1	352,121,655	411,378,345	763,500,000	5,000,000	33,175,000	76,350,000	76,350,000	76,350,000	76,350,000	76,350,000	76,350,000	267,225,000
			5~9층	3	355,718,968	415,581,032	771,300,000	5,000,000	33,565,000	77,130,000	77,130,000	77,130,000	77,130,000	77,130,000	77,130,000	269,955,000
			10층 이상	1	362,913,595	423,986,405	786,900,000	5,000,000	34,345,000	78,690,000	78,690,000	78,690,000	78,690,000	78,690,000	78,690,000	275,415,000
	4	102동 1호	2층	1	350,276,878	409,223,122	759,500,000	5,000,000	32,975,000	75,950,000	75,950,000	75,950,000	75,950,000	75,950,000	75,950,000	265,825,000
			3층	1	350,276,878	409,223,122	759,500,000	5,000,000	32,975,000	75,950,000	75,950,000	75,950,000	75,950,000	75,950,000	75,950,000	265,825,000
			5~9층	2	357,517,625	417,682,375	775,200,000	5,000,000	33,760,000	77,520,000	77,520,000	77,520,000	77,520,000	77,520,000	77,520,000	271,320,000
	10	102동 4호	1층	1	341,329,714	398,770,286	740,100,000	5,000,000	32,005,000	74,010,000	74,010,000	74,010,000	74,010,000	74,010,000	74,010,000	259,035,000
			2층	1	344,927,027	402,972,973	747,900,000	5,000,000	32,395,000	74,790,000	74,790,000	74,790,000	74,790,000	74,790,000	74,790,000	261,765,000
			3층	1	348,524,341	407,175,659	755,700,000	5,000,000	32,785,000	75,570,000	75,570,000	75,570,000	75,570,000	75,570,000	75,570,000	264,495,000
			4층	1	352,121,654	411,378,346	763,500,000	5,000,000	33,175,000	76,350,000	76,350,000	76,350,000	76,350,000	76,350,000	76,350,000	267,225,000
			5~9층	3	355,718,968	415,581,032	771,300,000	5,000,000	33,565,000	77,130,000	77,130,000	77,130,000	77,130,000	77,130,000	77,130,000	269,955,000
			10층 이상	3	362,913,595	423,986,405	786,900,000	5,000,000	34,345,000	78,690,000	78,690,000	78,690,000	78,690,000	78,690,000	78,690,000	275,415,000
84B	15	101동 2호 102동 2호	2층	2	348,847,177	407,552,823	756,400,000	5,000,000	32,82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264,740,000
			3층	2	348,847,176	407,552,824	756,400,000	5,000,000	32,82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264,740,000
			4층	2	352,444,489	411,755,511	764,200,000	5,000,000	33,21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76,420,000	267,470,000
			5~9층	7	356,041,804	415,958,196	772,000,000	5,000,000	33,6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270,200,000
			10층 이상	2	363,236,430	424,363,570	787,600,000	5,000,000	34,380,000	78,760,000	78,760,000	78,760,000	78,760,000	78,760,000	78,760,000	275,660,000
	12	101동 3호 102동 3호	3층	2	347,094,638	405,505,362	752,600,000	5,000,000	32,63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75,260,000	263,410,000
			4층	2	350,691,952	409,708,048	760,400,000	5,000,000	33,02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266,140,000
			5~9층	7	354,243,146	413,856,854	768,100,000	5,000,000	33,405,000	76,810,000	76,810,000	76,810,000	76,810,000	76,810,000	76,810,000	268,835,000
			10층 이상	1	361,437,773	422,262,227	783,700,000	5,000,000	34,185,000	78,370,000	78,370,000	78,370,000	78,370,000	78,370,000	78,370,000	274,295,000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004-899860	에스엠하이플러스주식회사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1차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계약 체결 시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 후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지정된 계약기간 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제출(건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7.16.(목) ~ 2026.07.25.(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7.16.(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 당첨자 서류제출 일시 : 2026.07.18.(토) ~ 2026.07.21.(화) 10:00~16:00
-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주택	■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
		○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
		○	기타 무주택자 증명 서류	해당 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급신청자 (본인)	■ 발급기준: 본인발급 / 발급용도: 서류제출 및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신청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제출처: 에스엠하이플러스(주))
		○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위임하는 경우 일반적인 위임장 양식에 맞춰 직접 작성(서명)하여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7.23.(목) 10:00~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6.)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1통 제출(발급기준: 본인발급 / 발급용도: 계약 체결용)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제출처: 에스엠하이플러스(주))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1통 제출(발급기준: 본인 발급 / 발급용도: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제출처: 에스엠하이플러스(주))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tr><td>조항</td><td>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d><td>주거전용면적</td><td>수도권</td><td>비수도권</td></tr><tr><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tr><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제공되는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 조형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행사'의 브랜드(단지명 포함)와 동명칭(동수)은 향후 '시행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행정명령, 공부 미정리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입주시기, 소유권 이전절차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현장 확인 후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대지지분은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견본주택, 사인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 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 및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분양홍보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전 평면도, 배치도,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주택법 제60조 3항에 따라 건본주택 내 평면도(설계도면),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고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도서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고자 하는 동·호수가 동일 타입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조 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면적(m²) x 0.3025)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는 관계법령에 따라 발코니 일부가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건본주택에 비치된 사업계획승인도서 현황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건본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아파트는 향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 시행 변경인가, 구조재심의(파일기초에서 지내력기초로 변경 등) 등을 거쳐 설계내용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변경시 사전에 계약자의 동의를 득하며, 아파트, 부대시설, 각종 시설물 등의 미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 실별 배치 및 평면구성은 편의성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의 집기는 시공,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금유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 기준에 따릅니다.
- 본 단지의 계약시점에 따라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사업주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 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게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사중 현장여건 반영 및 품질개선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자의 동의와 무관한 항목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공급 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같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 보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공급금액 납부안내 등을 위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수신에 동의하며, 사업주체에게 번호 변경 미고지 및 계약자의 휴대폰 수신상태 문제로 인한 SMS 미수신의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단, 벽체공용면적 제외) 및 기타공용면적은 단지 전체 면적을 합산 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 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시 기존 설치 마감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입주자')가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공간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무관합니다.
- 계약 전 분양계약서의 기타사항,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 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본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5.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주민카페,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옥외 운동시설(2개소), 피트니스센터(1개소, 102동 1층)], 관리사무소, 직원휴게실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2

구 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2층	2.3m	2.3m
지하 1층	2.7m	2.8m

※ 본 아파트의 주차장 및 출입구의 높이는 공사시 부착물 등에 따라 실 유효 높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에스엠하이플러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3층(신촌동, 신촌민자역사)	131111-0191187
	주식회사 아주엠앤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11층(수송동)	110111-2725434
시공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2층(신촌동)	110111-0119762

■ 견본주택 및 안내사항 :

구분	약도	안내사항
내용	 견본주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3-1	■ 현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135-1번지 일원 ■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3-1 ■ 운영시간 : 10:00 ~ 17:00 ■ 운영기간 : 분양종료시까지 ■ 분양문의 : 1544-6236 ■ 홈페이지 : https://www.수원역아너스빌.com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공급(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공급(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최근까지(2026.06.15.)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반영된 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